

발송번호: 9-5-2025-007595661

발송일자: 2025.01.21.

제출기일: 2025.03.21.

##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출 원 번 호 40-2023-0163518  
상 품 류 제 9 류를 포함한 2개류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의견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연장)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 절 이 유

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절이유의 대상이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상품은 거절 대상 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 됩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 및 제68조).

-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을 날부터 3개월, 연장 가능)에 심판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없거나, 심판 또는 재심사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 또는 재심사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을 빠르게 상표등록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상표법 제 40조 및 제41조)하거나 분할출원(상표법 제45조)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본 출원	인용	인용	인용	인용
4020230163518	4100372600000	4005590660000	4017021060000	4019477810000
				
인용				
4022794960000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절이유1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법 제40조)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법 제45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출원상표의 일요부인 ‘OUFF’는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4100372600000호 (AUF)와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G430301] 남성용 및 숙녀용 수영복,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 래시가드, 브라컵이 있는 수영복, 비키니,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아동용 수영복, [유사군 코드 G430301, G430305, G450101, G4503, G450401, G4513] 스포츠의류, [유사군 코드 G450501]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② 이 출원상표의 일요부인 ‘OUFF’는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4005590660000호 (AUF)와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G430301, G430305, G450101, G4503, G450401, G4513] 스포츠의류, [유사군 코드 G450501]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③ 이 출원상표의 일요부인 ‘OUFF’는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4017021060000호 (WOOOF), 제4022794960000호(우프) 및 제4019477810000호 (woof.BY BETTERS)의 1요부 “woof”와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G3405] 수영용 안경, 수중안경, 스쿠버다이빙용 고글. 끝.

\* 출원공고 후 선출원이 의제하여 심사일관성을 위해 의견제출을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21.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이상엽 \_\_\_\_\_

1.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042-481-8107(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이미지로 작성된 부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서류철 열람/복사 신청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특허로([www.patent.go.kr](http://www.patent.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http://www.kip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문산동, 정부대전청사)